

2018년 산업안전정책 주요 시행사항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1)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명확화

1. 발주자[건설] 책임 부여

<1>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

○ 발주자가 공사단계별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신안업 개정, '18)

○ 발주자가 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18)

○ 건설공사의 입찰 시 안전관리비는 낙찰율과 관계없이 공사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고시·지침개정, '18)

<2> 공공기관 발주자 책임 선도모델 정립

○ 발주청이 기획·설계단계부터 공사과정 전반의 위험요소를 점검합니다.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하고, 주무부처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작업 완료 이후에만 공사에 착수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합니다.

○ 200억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300억 이상)의 안전평가를 확대합니다.

○ 공공부문 평가 시 산재 예방 노력 및 결과 관련 항목을 신설·강화합니다.

2. 원청 역할 확대

<1>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

○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대폭 확대합니다.

(22개 위험장소 → 원청 관리 下 모든 장소)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하청사업

주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신안법 개정, '18)

○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高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인가 대상을 확대합니다.
(신안법 개정, '18)

○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격 하청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2>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토록 유도

○ 원청이 하청의 재해예방을 지원하도록 원청이 하청 재해율까지 통합관리하고 이를 명단공표, 행정제재 등과 연계합니다.

○ 하청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 시 원청이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신안법 개정, '18)

3. 하청 등 사업주 책임 이행 강화

<1>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

○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강화합니다. (사업장 감독·기술지도 시 확인)

○ 위험성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제도(산재예방요율제) 적용업종을 확대합니다.
(보험징수법 시행령 개정, '18)

<2> 하청업체 안전관리 활동 활성화

○ 원청이 하청의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유도합니다. 하청이 원·하청 공생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 18001)을 ILO 등 국제기준을 반영한 인증으로 개편합니다.

<3>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 안전관리 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300 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합니다. (기특법 개정, '18)

○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에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 벌금형을 가중합니다. (신안법 개정, '18)

○ 정책자금, R&D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산업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 추진합니다.

4. 노동자 안전수칙 준수 및 참여를 통한 사고방지

<1>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감독, 점검 등을 활용한 계도·적발을 강화합니다.

○ 공공발주 공사에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시 1차 현지 시정지시 후 2차 위반 시 즉시 퇴거 조치합니다.

○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배포하고,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합니다.

<2> 긴급대피 및 작업중지 요청제도 실효성 보완

○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작업중지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시 제재를 신설합니다.

(신안법 개정, '18)

<3> 노동자 위험상황 신고 활성화

○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상황 발견 시 신고할 경우 현장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등을 실시합니다.

○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을 확산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2)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1. 고위험 분야에 지도·감독 역량 집중

<1> 위험요인별 지도·감독 집중 실시

○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합니다. 고위험 업종 및 재해 다발 요인을 반영하고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에 파악 공유하여 시기별 밀착관리가 이뤄집니다.

○ 고위험 사업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광역산업안전팀'을 설치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또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재해다발 건설업 본사에 대한 감독 등을 전담합니다.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을 다수 투입하고 장기간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합니다.

<2> 산업별 소관부처가 참여하여 체계적 관리

○ 산재다발 업종의 산업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소관부처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 대형사고 반복 발생 시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합니다.

<3> 자치단체의 적극적 산업재해 감소 노력 유도

○ 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도록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항목에 '산재감소 노력'을 추가합니다.

○ 노동부·자치단체가 함께 건설업 산재 감소를 위한 현장점검, 인허가 시 안전관리 강화, 지역 내 캠페인 등을 추진합니다.

<4> 관계부처 합동 「안전보건 리더회의」 운영

○ 고위험 업종 소관 부처 및 주요 기업 경영진, 고위험사업장 집중 지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합니다.(연 1회 이상, '18~)

○ 고위험 업종 행사 간담회 등 계기 시마다 안전이슈를 함께 논의합니다.

2. 건설분야

<1> 착공 전부터 위험요소 사전 점검

○ 위험공종 및 일정규모 이상 공사 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안전관리 관련 조치가 포함되도록 실효성있게 개선합니다. 또한 계획 승인 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합니다.(건진

법 개정, '18)

○ 건축허가 및 착공 시 사전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합니다.

○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3 층 또는 연면적(500 m² 이상)은 허가제(현재 신고제)로 전환하고 감리를 도입합니다.

<2>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주기를 3 개월 주기로 단축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인대상 공사의 규모를 단계적(120 억 이상 7,480 개소→ 50 억 이상 13,938 개소)으로 확대합니다. (신안법 시행령 개정, '18)

○ 건설업면허 없이 공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는 현장관리인이 안전 관련 사항을 감리인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건축법 개정, '18)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주요시설 개선 등을 조치합니다.

○ 위험상황 발생 시 감리의 공사중지 권한 법제화, 이로 인한 손해 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건진법 개정, '18) 또한 안전관리에 충실하도록 감리보고서에 안전관리 이행상황을 기입하도록 개선합니다.

<3> 자율개선 노력 유도 및 사고발생시 불이익 강화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 위 건설사까지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매년 전년대비 20% 감축)를 추진합니다.

○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에 대한 입찰 및 영업 불이익을 강화합니다. 안전관리 미흡시 벌점 강화, 벌점 누적 및 영업정지 시 영업불이익을 부여합니다.

3. 건설기계·장비 분야

<1> 임대 및 사용 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 명확화

○ 임차업체 | 기계를 대여받는 임차인에 대한 유해·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원청이 영상기록 및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발주가가 계약 시 원청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체·선정·감독·운영단계의 개선방안을 수립합니다.(건진법 시행규칙, '18)

○ 임대업체 | 임대차 계약 시 기계·장비 사용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임차업체와 함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 조작자 | 자격·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장비(이동식크레인 등)는 취업 전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기중기 등)는 보수교육을 신설합니다.

<2> 제조 및 검사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

- 건설기계 형식승인·신고 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ISO) 및 기술 발전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 개선합니다.
- 안전한 장비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미수검 및 안전검사 불합격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장기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 장비는 등록말소하고 미수검 건설기계 및 불합격 장비 사용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합니다.
- 기중기 주요 부품 중 재해 연관이 깊은 붐과 유압실린더 등의 검사기준 강화를 검토합니다.
- 건설기계·장비 안전성 검사 내실화를 위해 교육강화 및 현장 실무수련 확대 등 검사원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3> 현장 안전사용 지도

- 장비 조작자가 작업시작 전 자체점검을 이행하도록 체크리스트 및 표준작업계획서를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 현재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확대합니다.
- 건설기계·장비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민·관 합동 건설기계 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제도를 개선합니다.

4. 조선·화학업 분야

<1> 조선업 안전관리 여건 조성

- 원청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을 확보합니다.
- 재해취약 직종별 안전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보급합니다.
-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2> 화학사고 고위험군 관리 강화

-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여 고위험군은 공정안전관리(PSM)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합니다.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적용대상을 정기적 위험작업에서 돌발위험작업까지 확대하여 사전 점검·기술지도를 확대합니다.

5. 금속·기계[소규모]제조 분야

<1> 기술지도, 재정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활동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컨설팅형 기술 지도를 실시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은 용자한도 확대 등 우대합니다.

<2> 민간기관 기술지원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우수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술 지원 실시합니다.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공표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합니다. 사업장 스스로 우수한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선택·활용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3) 현장 안전관리 강화

1.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 <노동부>

<1> 컨설팅형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감독물량 중심이 아닌 감독기관과 인원을 늘려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형 지도·감독으로 개편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참여시켜 필요 시 장비를 이용한 실측 등을 통해 명확한 작업환경 실태 확인 후 개선을 지도합니다.

<2> 산업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체계적 점검

○ 노동부·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산업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시스템을 활용해 산재취약 사업장 등을 분석하여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감독 전 대상 사업장 취약요소 확인 등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3> 근로감독관 증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 산업안전 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감독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21년까지 기계·화공 등 기술직 감독관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신규자 이론 및 현장심화교육, 감독관 경력관리 등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합니다.

2.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점검·감독 <노동부>

<1> 노사 참여형 지도·감독을 통한 수용성 제고

○ 사업장 방문 시 사업장 노사에게 감독대상 선정사유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감독결과 강평에 노사가 참여토록 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노사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2> 불시점검 강화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 해 점검 실효성 확보 및 현장 경각심을 제고합니다.

<3>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

○ 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합니다.

○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4> 유사사고 발생 억제를 위한 신속홍보 및 지도 강화

- 동종업계 등 네트워크를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원인·위험요인 등을 신속히 전파합니다.
- 산재 감소에 필요한 핵심사항 중심으로 점검표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적용합니다.

3. 안전 관련 불공정관행 해소

<1>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구축 <국토부>

-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방안도 마련합니다.
- 과도한 저가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자 선정 시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기업은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강화 및 퇴출 유도, 기술자의 건설현장 배치도 강화합니다.

<2> 불공정관행 및 불법 재하도급 점검·적발

-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비 미지급 및 부당특약 요구 등을 점검합니다. <공정위>
-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재수준 정비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각 부처>
-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주는 부정당거래 업체 지정 등 조치를 강화합니다.